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시 개정 알림

- 환경부 환경영해구제과-900(2023.4.19.)호와 관련입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하며, 측정기관은 비산 정도 측정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22.11.7.)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난해 환경부는 현행 석면 비산관리 조사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위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고시 시행('23.5.8.)에 앞서 현장 혼선 예방 등을 위해 불임과 같이 개정 고시 전문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개정 고시 전문 1부.

2. 고시 개정 주요내용 안내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 자치구 석면관리부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귀하

주무관 정인석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생활환경과장 04/24
허정원

협조자 실무사무관 길인자

시행 생활환경과-6269 (2023. 4. 24.)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1동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 전송 02-768-8863 / cis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 개정 안내

시행 : 2023.5.8.

주요 개정내용

▣ 가. 용어 정의 신설(제3조)

- 비산측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작업중, 작업기간, 폐기물 적정보관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나. 측정 대상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 및 체계 정비(제4조, 제5조)

- 기존 개별/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방식을 비산위험을 고려해 실내/실외작업으로 변경
- 사업장 분류 방식 변경에 따라 측정지점(시기) 보완 및 체계 정비
 - 실내에서 실외로 연결되는 폐기물 반출구 등 측정지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폐기물 반출시에만 폐기물 반출구 측정
 - 실외 측정지점에서 음압기 제외
 - 실내, 실외작업 중 우천 시 실외측정은 생략할 수 있으나 음압기 배출구는 예외

기준		변경	
개별 사업장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 관련 사업장	실내 사업장	실외 사업장
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지점	위생설비 지점
작업장	작업장	작업장	작업장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주변	주변	주변	주변
실외	실외	실외	실외
음압기	음압기	음압기 배출구	-
-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반출구	-
-	거주자 주거지역	-	-

▣ 다. 개인(작업자 이동) 시료 채취 방법 도입(제4조~제8조)

- 폐기물 반출과 같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개인 시료 채취 대체 등 측정방법 보완

▣ 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보완(제4조~제9조)

- 위상차현미경 필터 공극 크기 규정, 유량을 1,200L 미만 시료채취한 경우는 분석 계수 시야 수를 반드시 기재토록 명시
- 시험방법에서 정량분석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주사전자현미경법 삭제 등